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67
----------	-----

2023년 6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30일, 운영회 의원 외 51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6월 21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운영회 의원]

### 가. 제안이유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 이 중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0.59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자녀 가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인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제14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다자녀 가족에게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목적임.

### 나. 검토의견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sup>1)</sup>에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sup>2)</sup>한 바 있음.
- 서울시 합산 출산율은 2020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 0.84명에 밀도는 0.64명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도 0.63명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sup>3)</sup>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2021년 기준<sup>4)</sup> 서울시 다자녀가구 중 세 자녀 이상인 세대는 총 6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년~2025년)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1.9.15.)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통계청,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통계청, 2021)

1,777세대이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총 43만 4,184세대로 집계되고 있음.

〈서울특별시 다자녀가구 현황('21년 기준, 통계청)〉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351,127	372,407	56,883	4,313	581
※1자녀 이상(785,311가구), 2자녀 이상(434,184가구), 3자녀 이상(61,777가구)				

- 동 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에서는 다자녀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sup>6)</sup>에서도 두 자녀와 세 자녀를 차등하지 않고 두 자녀 이상이거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 자녀 이상 발급)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
-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액은 연간 입장료 1억원 수준으로 추계<sup>7)</sup>되고 있으며, 2022년 실제 입장객 기준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감면(30%) 내역이 서울대공원 3천8백만원, 서울식물원 1천7백만원으로 집계되는바

5)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시행일:2007.12.26.)

6)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상생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7) 재정분석담당관(2023.6.2.)(※공원여가정책과 제공 자료 준용)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

입장료 감면율을 30%(현재)에서 100%로 조정했을 때 감면액 추계결과 ≙ 500,000천원(연평균 100,000천원)

산술적으로 100% 감면으로 확대할 시에는 연간 서울대공원 5천1백만원, 서울식물원 2천3백만원의 추가 세입감소가 예상됨.

- 2023년 세외수입 입장료수입이 서울대공원 동물원 및 테마가든은 50억 7백만원, 서울식물원은 25억 1천2백만원임을 고려할 때 연간 세입 감소액은 서울식물원 입장료 수입의 0.9%, 서울대공원 입장료 수입의 1.0% 수준이므로 서울시 재정으로 충분히 시행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다만, 두 자녀 이상의 가구가 세 자녀 이상 보다 약 7배 많은 점을 고려하면 세외수입 감소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공원입장료 현황〉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서울대공 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li> <li>◦ 입장료에 시설이용료를 포함하거나 기업 및 단체와 협약에 따라 입장료나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기획상품 등은 공원관리청이 따로 할인요금을 정할 수 있다.</li> </ul>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서울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4.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 한다.</u></p> <p>3.·4. (생략)</p> <p>③·④ (생략)</p>	<p>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